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취득.처분할 균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자체확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합니다

2. 주요 골자

◎ 2003년도 균유재산 취득.처분계획 2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 취득이 총 4건으로 761,446천원이며

- 토지 매입이 1건 7필지(10,532㎡) 298,114천원

- 토지 및 건물 교환이 3건 5,781㎡(건물 208.8㎡) 463,332천원

⇒ 처분은 총 3건으로 318,342천원이며

- 토지 교환이 3건 4필지(4,174㎡) 318,342천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경찰서 부지 교환(재무과)

구 경찰서에 대한 평창경찰서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부지 900㎡ 및 건물(자원봉사센터 1동 2층) 208.8㎡와 평창읍 하리 220-5번지의 1필지와 상호 교환하여 관리코자 하며 교환 차액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2) 대관령원예조합 창고부지 교환(재무과)

1980년 대관령원예조합 창고 신축시 착오로 군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신축하여, 2002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교환 협의 요청이 있어 군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교환코자 하며 감정평가 결과 차액에 대하여는 2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3) 용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 및 교환(재무과)

용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 관리계획승인 "용전리 135-11번지"에 대한 협의 결과 소유주가 매각 계획이 없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용전리 415번지의 2필지 2,756㎡를 매입기로 하였으나, 소유자가 1984년 용전보건지소 신축 당시 기부채납한 용전리 191-2번지 345㎡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여 416-1번지 670㎡와 교환하고 건물은 매각처리코자 합니다.(구 용전보건지소 건물 151.14㎡)

4) 효석문화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부지매입(문화관광과)

효석문화마을 방문객 편의 및 기반시설 확충등 효석문화제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하여 창동리 410번지의 6필지 10,532㎡를 매입코자 합니다.

3. 관계 법령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부서별 취득재산 요구사항

(단위:㎡,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취득면적	추정가액	취득필지
합계	토지 4건 12필지	16,313	761,446	
	건물 1동	208.8		
재무과	3건	5,989.8	463,332	
	구경찰서 부지 및 건물 교환	900 건물 208.8	250,000	하리 113-1 건물 1동 208.8㎡
	대관령 원협창고부지 교환	2,125	106,250	횡계리 산 334-61
	용평소방출장소 부지 매입 및 교환	2,756	107,082	용전리415번지의 2필지
문화관광과	1건	10,532	298,114	
	효석문화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부지매입	10,532	298,114	창동리410번지의 6필지

▶ 부서별 처분재산 요구사항

(단위:㎡,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처분면적	추정가액	처분필지
합계	3건	4,174	318,342	
재무과	3건	4,174	318,342	
	구경찰서 부지 및 건물 교환	1,806	220,000	하리220-5번지의 1필지
	대관령 원협창고부지 교환	2,023	80,920	횡계리377-110
	용평소방출장소 부지 교환	345	17,422	용전리191-2

총괄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2차변경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당초			변경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9	72,598	1,670,259	5	56,076	908,813	4	16,522	761,446
		건물	12	6,818.54	5,680,484	12	6,818.54	5,680,484			
		기타									
	매입	토지	7	68,694	1,293,909	5	56,076	908,813	2	12,618	385,096
		건물	1	1208.34	116,764	1	1208.34	116,764			
		기타									
	교환	토지	2	3,904	376,350				2	3,904	376,350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1	5610.2	5,563,720	11	5610.2	5,563,720				
	기타										
분	합계	토지	3	4,174	318,342				3	4,174	318,342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3	4,174	318,342				3	4,174	318,342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2차변경안)

(단위: m²,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합계	토지 건물	2건 9필지	12,618	385,096			
1	답	용전리415	1,743	76,692	하반기	용평소방파출소 부지	안중복
-1	"	용전리415-1	343	10,290	"	"	"
2	답	창동리410	2,889	88,981	하반기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이진노
-1	답	창동리410-2	1,602	45,817	"	"	"
-2	"	창동리410-3	329	10,660	"	"	"
-3	"	창동리411	304	8,239	"	"	"
-4	대	창동리412	212	6,848	"	"	김성호
-5	답	창동리413	3,256	87,912	"	"	"
-6	답	창동리432-1	1,940	50,440	"	"	하권교
			이하	여백			

2003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일반회계(2차변경안)

(단위: m², 천원)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구분	지목	소재지	수량					
합계	토지	취득			3,695	276,350			
		처분			4,174	318,342			
	건물	취득			208.8	100,000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대	하리113-1	900	150,000	하반기	구 경찰서 부지	경찰청
		처분	대	하리220-5외1	1,806	220,000	"	현 경찰서 부지	평창군
	건물	취득	대	하리113-1	208.8	100,000	"	구 경찰서 건물	경찰청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대	횡계 산334-61	2,125	106,250	하반기	대관령원예조합 창고부지	축산기술 연구소
		처분	전	횡계377-110	2,023	80,920	"	사료재배지	평창군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3	토지	취득	답	용전리416-1	670	20,100	하반기	용평서방파출소 신축 부지	안중복
		처분	대	용전리191-2	345	17,422	"		평창군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 관계법령 발췌

1.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3.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3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중요재산이 대상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향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재산의 처분기준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일단의 토지 면적이 --- 700m²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

(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 2000m² 이하로서 81.4.30. 이전 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가)①의 규모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라) ⑥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